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1300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1명)

찬 성 자 : 정진술, 김제리, 김정태, 노식래,  
김종무, 신정호, 김재형, 채인묵,  
김화숙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위촉직 위원 중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므로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 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4. (생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u></p> <p>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 -----</p>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  
-----.

1.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현행과 같음)

② -----  
-----  
---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